

#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34,699,886	49,040,997
일반회계	1,487,794,845	44,633,845
특별회계	146,905,041	4,407,151
공기업특별회계	122,209,083	3,666,27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5,822,447	1,674,673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6,386,636	1,991,599
기타특별회계	24,695,958	740,879
주택사업특별회계	2,535,103	76,05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69,394	80,082
농공단지특별회계	948,000	28,44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6,000	7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33,400	124,0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9,617	187,789
수질개선특별회계	2,006,500	60,195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366,968	101,00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476	134
도시개발특별회계	1,690,500	50,715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056,000	31,6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7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3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2,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